

서울특별시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 련 1857
----------	-----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24년 6월 17일

제 안 자 : 보건복지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최적관람석 구매방식을 현장 및 온라인 또는 유선구매까지 가능하도록 수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자는 관람권 판매 시 최적관람석을 일반석과 구별하여 판매하고, 현장 및 온라인 또는 유선구매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.

(안 제4조의2제2항)

서울특별시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·운영 조례
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4조의2제2항 중 “온라인 구매가 모두”를 “온라인 또는 유선구매가”
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수정(안) 대비표>

현행	개정 (안)	수정 (안)
제4조의2(<u>최적관람석의 관리</u>)공연장 등의 운영자는 장애인 등이 최적관람석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등 최적관람석 표기를 하여야 한다.	제4조의2(<u>최적관람석의 관리 및 운영</u>) ① (생략)	제4조의2(<u>최적관람석의 관리 및 운영</u>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
<u><신설></u>	②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자는 관람권 판매 시 최적관람석을 일반석과 구별하여 판매하고, 현장 및 <u>온라인 구매가 모두 가능</u> 하도록 하여야 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 <u>온라인 또는 유선 구매가</u> ----- -----.

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·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2의 제목 “(최적관람석의 관리)”를 “(최적관람석의 관리 및 운영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자는 관람권 판매 시 최적관람석을 일반석과 구별하여 판매하고, 현장 및 온라인 또는 우선구매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〈신·구조문대비표〉

현행	개정안
제4조의2(최적관람석의 관리) (생략) 〈신설〉	제4조의2(최적관람석의 관리 및 운영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 ②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자는 관람권 판매 시 <u>최적관람석을 일반석과 구별하여 판매하고, 현장 및 온라인 또는 우선구매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.</u>